

2024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Korea Worker Institute · Union Center

# 이슈와 쟁점

**일** 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교육·조사·연구 활동으로 미래세대와 노동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슈와 쟁점은 전문 필진들의 글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노동, 청년, 인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봅니다.

**vol. 28**

**서비스 이동노동자 가치인정의 제도화 과제 모색**

**- 임금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혼재성의 노동 -**

## 서비스 이동노동자 가치인정의 제도화 과제 모색

### - 임금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혼재성의 노동 -

김 종 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송 민 정 | 일하는시민연구소 정책위원·태재대학교 교육콘텐츠원 연구교수

#### 1. 머리말 - 이동노동자 문제

- 2000년대 초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한국 사회와 노동운동 진영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음. 당시 비정규직 규모와 통계 등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전 사회적 의제가 된 것임. 노동조합들도 특수고용대책위나 미조직 비정규조직화 사업과 활동이 전개된 시기로 산업구조와 자본의 외주화 등과 맞물린 대응이었음.
- 그런데 2010년~2015년 전후부터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이나 기존 임금노동자 일과 업무 등이 플랫폼 자본과 기업의 확산과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 오프라인 플랫폼노동으로는 모빌리티(운송)부터 음식배달과 기사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노동으로는 크몽, 숨고, 클라우드웍스 등을 통해 일하는 형태가 잘 알려진 현실임.
- 최근 특수고용노동과 플랫폼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제공자’ 형태로 규정(2023.7)했고, 주요 노동문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호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임. 지자체에서도 노동권익센터의 캠페인이나 쉼터 지원 사업 정도임.
-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중에서 ‘이동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가치인정이나 여타의 노동기준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주로 음식배달, 택배, 대리운전, 가전설치수리와 대여방문점검 그리고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재가방문요양사 등 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sup>1)</sup>

\* 이 자료는 2024년 서비스연맹 주최 국회 토론회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토론회』의 필자들의 발표 원고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유범상(2017), 「인정투쟁:한국노동운동과 경계에 선 사람들」 《산업노동연구》, 23권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165~195쪽에서 호네트를 필두로 하는 인정투쟁이론가들이 새로운 갈등현상을 포착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평등한 분배나 경제적 평등 뿐만 아니라 존엄과 존경에 초점을 맞춘다(Honneth, 2014: 43). 호네트는 “오직 사회운동을

- ‘이동노동자’에 대한 학문적 혹은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는 노동자들을 이동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소위 이동노동자 직업군이 많아지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요구도 분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이 대표적임. 예를 들어 다음 업무가 들어오기까지의 ‘대기시간’(on-duty waiting time)과 한 업무를 마치고 다음 업무 장소까지 이동하는 ‘이동시간’은 건별 ‘개수’에 따른 소득 형태로 현재 보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대기와 이동 후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헛걸음(노쇼)’ 등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제기되고 있음.
-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 등 이동노동 특성상 고정된 장소나 시간이 아닌 이동하며 처리하는 업무에 따라 보수·소득이 정해지는 구조임. 이처럼 ‘대기시간’, ‘이동시간’, ‘헛걸음’ 등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그 외에도 서비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임금구조 특성을 파악하여 숨겨진 혹은 은폐된 노동 가치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
-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이 글의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 서비스연맹 산하 12개 주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2024년 1월 2일~8일 설문조사, N=1,210명) 원자료를 분석한 것임 ([별첨자료] 참조). 향후 이동노동자 단가와 보수 등 최소한의 가치인정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및 운동적 과제를 탐색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했음.

## II. 불안정 비임금노동자의 법제도적 한계

### 1. 특수고용노동 제도적 논의와 노동문제

-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에서 발생한 노동형태(모호한고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로서 노동의 보호 한계성을 지적함. 때문에 기존 법률 제개정이나 사회협약 혹은 분쟁해결 기구, 공정거래 및 표준계약과 단가, 사회보험, 안전건강, 교육훈련 등의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의 필요성을 권고와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때에만 무시에 대한 경험은 정치적 저항행위를 동기화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Honneth, 2014: 263). 그리고 “사회운동이 자신들이 집단적으로 제시한 속성과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공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하면 할수록 이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나 신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커진다”(Honneth, 2014: 244).

의견표명(2007. 10. 16, 2017.4.6.)을, 최근에는 플랫폼노동 관련하여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2021.11.22.)을 한바 있음.<sup>2)</sup>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특별한 노동자(special worker)가 아니라 ‘종속적인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이고, 진성 자영업자처럼 독립적으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계약자라는 의미임. 종속적 계약자는 종속되어 일을 하는 새로운 고용행태로 임금노동자처럼 근로계약을 맺지 않지만 노무제공자로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 한편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규정(고용권법 제 230조 1항)하여 고용계약(contract of employment)을 체결한자 정의하는데, 제3항에서 노무제공자(worker)는 근로자를 포함하나 중간범위 수준의 ‘limb’의 노무제공자(우리의 특고 유사형태)로 구분함. 영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이들에게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률상 규정을 물론 개별적 노동보호법상의 권리(최저임금법 적용 등)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종사상지위를 새롭게 분류하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념 대신 경영자, 임금근로자, 독립취업자, 종속적 계약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재 분류하는 안을 확정했음.<sup>3)</sup>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종속적 계약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나라마다 상이했기에 종속적 계약자를 종사상지위로 명확히 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 2. 플랫폼노동 문제와 최저 소득 보장 논의

- 국제기구 및 각 국가별 플랫폼노동 대응은 구속력과 포괄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sup>4)</sup> 유럽연합(EU, 2021·2022)은 각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 지침 및 권고와 이행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도 제안하고 있음. 향후 각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한 지표(5가지 중 2개)에 해당 되는 근로자성 문제에 맞춘 법률을 해야하는 상황임.
- 더불어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방향은 플랫폼경제와 노동의 정의, 정책적 이질성,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분쟁해결 메커니즘, 알고리즘, 모니터링, 고용지위와

2)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7577&menuLevel=3&menuNo=91>

3) 정부는 2024년부터 고용 통계를 집계하면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음 아마도 특수고용노동자 통계 포착 이후 새로운 변화에 일단 조응하는 것으로 판단됨(<https://v.daum.net/v/20240212132138731>).

4) 2022년 ILO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decent work’(괜찮은 혹은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주제를 2025년 ILO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고, 2023년 3월 ILO 이사회에 제공된 ‘A normative gap analysis 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에서는 플랫폼노동에서 ‘대기시간’이 규범적 공백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박은정, 2024).

보호, 투명성 등임. 더불어 최근에는 플랫폼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과 교육훈련 등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음.

- 한편 유럽이나 영미 국가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거나 최저임금과 노동안전(이탈리아 볼료냐 : 도시의 현장과 노동기본권, 미국 시애틀 : 최저임금 15달러 운동, 뉴욕: 프리랜서 법률, 메사추세츠: 유급병가, 영국 에든버러: 깃노동 권리)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에서 플랫폼노동의 법률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김중진, 2024).

○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오프라인 플랫폼노동자 중 ‘이동노동자’로 볼 수 있는 공유택시기사나 음식배달 기사의 최저임금보장 법안이 발의 되거나 표준임금제 및 최저임금 보장 논의도 확대되고 있음. 주로 플랫폼노동자의 시간당 최저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방향이 논의되고 있음.<sup>5)</sup>

- 대표적으로 국내에도 소개된바 있는 미국 뉴욕시 사례이며, 뉴욕시는 2021년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기준(A minimum pay standard for delivery workers(23년 17.27달러 보장, 25년 목표 23.82달러임) 승인했음.<sup>6)</sup> 뉴욕시는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음.<sup>7)</sup>

### III. 서비스 이동노동자 실태와 특징

#### 1.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 소득, 시간

○ 첫째, 이동노동자 소득구조 실태조사 결과 장시간 노동은 개수 임금이라는 건수(수수료=성과기반)에 기반하고, 임금노동자와 달리 업무상 필요한 거의 모든 지출을 개인이 감당

5) <https://newrepublic.com/article/162266/doordash-uber-eats-delivery-workers-bathroomstemployee-status>

6) <https://dol.ny.gov/news/nys-department-labor-announces-over-330000-pua-applications-processed-more-74-billion-benefits>

7) 뉴욕시는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음. 첫 번째는 표준방식(the standard method)으로 이 앱이 각 배달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개별 노동자의 주중 운행 시간 합계에 최저 급여율을 곱한 금액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앱이 모든 배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은 모든 노동자의 주중 총 운행 시간 및 대기 시간 합계에 최저 급여율을 곱한 금액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함. 두 번째는 대체방식(the Alternative Method)으로 최저 지급을 60%로 나누어 계산함. 60%라는 수치는 배달 건당 대금을 지급하는 앱의 평균 '사용률'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앱의 사용률은 배달노동자가 해당 앱에 참여한 "배달 시간(trip time)"을 "배달 시간"과 "대기 시간(on-call time)"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앱에 연결된 근로자의 총 시간으로 나눈 값임. 해당 자료는 2024년 3월 5일 토론회에서 박은정(2024), '대기시간'(on-duty waiting time)에 대한 평가와 가치인정',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토론회>, 서비스연맹에서의 토론회 문을 재인용한 것(원자료 : <https://rules.cityofnewyork.us/wp-content/uploads/2023/06/DCWP-NOA-Minimum-Pay-for-Food-Delivery-Workers.pdf?fbclid=IwAR2tqWskp0K75jnM5qFwDrrxfjzY11zlf1pqxaM3ScBwVWqrHQNuuuzzCPk>)

하기 때문임. 2024년 1월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직종의 총액 기준 상대적 소득은 ‘착시효과’(장시간 노동과 소득 구조=개인 부담 비용 : 수리비용, 유가 비용 등)에 불과함.

- 월 평균 소득(보수)은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고 일부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음. 이동노동자 월 평균 총소득은 268.7만원(민간 특고 292만원 / 시급 단가 2만2천원 → 13.4만원)인데,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51.2만원(유류교통비 19.2만원, 통신비 6.8만원, 유지보수비 13.2만원, 보수교육비 3.6만원, 업무수행지출비 10만원, 기타 소모품비 10만원)이었기에 실제 순소득은 216만원이었음.

[표1] 서비스 이동노동자 노동시간 - 1일, 1주, 방문장소, 헛걸음, 이동-대기 시간

| 고용 형태 | 공공 민간 | 이동 노동 주업 부업 여부 | 노동시간 현황    |             |              |              |                 | 1일 방문장소 헛걸음  |           | 1일 이동, 대기시간 |           |
|-------|-------|----------------|------------|-------------|--------------|--------------|-----------------|--------------|-----------|-------------|-----------|
|       |       |                | 1주일 출근 일 수 | 1일 평균 노동 시간 | 1주일 평균 노동 시간 | 주52 시간 초과 비율 | 하루 평균 휴게 시간 (분) | 방문 장소 (곳, 개) | 경험 횟수 (회) | 이동 시간 (분)   | 대기 시간 (분) |
| 임금    | 민간    | 주업             | 5.2        | 8.9         | 46.0         | 16.0%        | 49.7            | 21.8         | 6.9회      | 101.2       | 42.6      |
|       |       | 비주업            | 4.5        | 8.0         | 36.6         | 7.1%         | 21.4            | 5.9          | 4.6회      | 63.9        | 35.0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4.6        | 5.5         | 25.7         | 2.7%         | 29.6            | 4.0          | 1.3회      | 44.6        | 46.8      |
| 특고    | 민간    | 주업             | 5.5        | 9.4         | 52.2         | 47.7%        | 50.4            | 74.2         | 12.5회     | 111.2       | 48.5      |
|       |       | 비주업            | 4.6        | 8.7         | 40.4         | 12.4%        | 23.9            | 47.5         | 4.8회      | 37.1        | 25.4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4.7        | 5.0         | 24.1         | 6.6%         | 21.8            | 2.5          | 1.8회      | 43.9        | 29.1      |
| 합계    |       |                | 5.2        | 8.4         | 44.2         | 28.2%        | 42.7            | 45.4         | 9.4회      | 88.2        | 43.2      |

[표2] 서비스 이동노동자 월평균 임금소득 및 단가, 기준

| 고용 형태 | 공공부 조 | 이동  | 월평균 임금소득 (만원) | 보수 주된 '단가 기준' (%) |         |     |     |      |     |      |
|-------|-------|-----|---------------|-------------------|---------|-----|-----|------|-----|------|
|       |       |     |               | 개별 단가 (천원)        | 개수 (건수) | 거리  | 지역  | 시간   | 중량  | 기타   |
| 임금    | 민간    | 주업  | 321.5         | 14.3              | 86.5    | 1.6 | 3.3 | 1.6  | 3.3 | 3.3  |
|       |       | 비주업 | 201.2         | 26.5              | 92.8    | 0   | 0   | 0    | 0   | 7.1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159.6         | 50.4              | 26.2    | 4.0 | 1.0 | 66.6 | 0   | 2.0  |
| 특고    | 민간    | 주업  | 292.3         | 9.2               | 82.3    | 9.2 | 2.8 | 3.5  | 1.2 | 0.7  |
|       |       | 비주업 | 218.6         | 27.2              | 81.1    | 0   | 2.3 | 9.4  | 0   | 7.0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223.3         | 91.3              | 48.1    | 1.8 | 0   | 37.0 | 1.8 | 11.1 |
| 합계    |       |     | 268.7         | 22.7              | 74.3    | 5.3 | 2.4 | 13.5 | 1.4 | 2.9  |

[표3] 서비스 이동노동자 임금구조 분해 - 수입과 지출

| 고용 형태 | 구분    |     | 순이익      |      | 평균 임금 (A) | 업무 상 월 평균 지출액(단위: 천원) |        |      |       |       |       |       |
|-------|-------|-----|----------|------|-----------|-----------------------|--------|------|-------|-------|-------|-------|
|       | 공공 부조 | 이동  | 총액 (A-B) | 시간급  |           | 계 (B)                 | 유류·교통비 | 통신비  | 유지보수비 | 보수교육비 | 업무수행비 | 기타소모품 |
| 임금    | 민간    | 주업  | 273.1    | 15.5 | 321.5     | 486.3                 | 254.2  | 43.4 | 133.3 | 10.5  | 13.6  | 13.6  |
|       |       | 비주업 | 187.6    | 15.5 | 201.2     | 198.5                 | 78.3   | 29.4 | 60.9  | 8.8   | 6.9   | 6.9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129.8    | 14.6 | 159.5     | 307.2                 | 158.5  | 64.0 | 52.9  | 47.1  | 18.1  | 18.1  |
| 특고    | 민간    | 주업  | 225.4    | 10.9 | 292.2     | 669.9                 | 211.6  | 91.1 | 168.6 | 49.7  | 179.1 | 179.1 |
|       |       | 비주업 | 193.9    | 12.1 | 218.5     | 245.9                 | 83.6   | 42.0 | 80.8  | 12.6  | 10.2  | 10.2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192.1    | 25.3 | 223.2     | 311.0                 | 122.4  | 37.9 | 56.1  | 42.1  | 44.9  | 44.9  |
| 평균    |       |     | 216.8    | 13.4 | 268.6     | 512.0                 | 192.4  | 68.9 | 132.3 | 36.0  | 100.7 | 100.7 |

- 둘째, 주요 서비스노동 중 ‘이동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이동과 대기노동의 숨겨진 노동에 직간접 원인이 있음.<sup>8)</sup> 2024년 1월 실태조사 결과 ‘이동이 주된 업무’ 비율은 66.9%였고, 이동장소는 45곳, 이동노동 시간은 1일 평균 시간 88분이었으나 이동노동시간 보상체계는 5.6%, 대기시간 보상체계는 3%에 불과했음. 조사 결과 이동노동 시간과 대기시간의 적정성 관련하여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동노동 특성을 보여줌.
- 게다가 업무 사전-사후 준비 시간(1일 조업 61.1분, 잔업 30.3분)은 보상되지 못하고, 소위 노쇼(헛걸음 등) 비율이 77.6%(월 평균 9.4회)나 되지만 보상 받지 못하는 구조임. 이 모든 항목과 영역 내용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월 평균 19만6천원에서 최소 9만원의 미보상 노동(노쇼 환산액: 8만2천원, 이동시간 거리 환산액: 7만4천원, 대기시간 환산액: 3만1천원)으로 추정 가능함.

[표4] 서비스 이동노동자 노동과정 미보상 현황 - 노쇼, 이동 및 대기시간, 근속기간

| 고용 형태 | 구분    |       | 헛걸음(노쇼)   |            | 보상체계 인정 비율 |       |       | 대기시간 활동  |       |       |      |
|-------|-------|-------|-----------|------------|------------|-------|-------|----------|-------|-------|------|
|       | 공공 부조 | 이동 노동 | 헛걸음 경험 비율 | 월평균 헛걸음 횟수 | 대기 시간      | 이동 시간 | 근속 보상 | 다음 업무 준비 | 콜대기   | 그냥 쉰다 | 기타   |
| 임금    | 민간    | 주업    | 92.4%     | 6.9회       | 5.5%       | 9.9%  | 47.0% | 65.4%    | 11.9% | 19.8% | 3.0% |
|       |       | 비주업   | 64.3%     | 4.6회       | 0.0%       | 0.0%  | 14.3% | 42.9%    | 0.0%  | 57.1% | 0.0%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29.8%     | 1.3회       | 2.6%       | 9.7%  | 13.5% | 53.5%    | 3.5%  | 38.6% | 4.4% |

8) 주요 서비스 이동노동자는 임금노동자 대비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1월 조사 결과 1일 노동시간 8.4시간, 1주 5.2일 노동, 1주 평균 44.2시간 노동, 52시간 초과 28.2%, 1일 휴게시간 42.7분, 대기시간 1일 평균 43.2분을 수행하고 있음.

| 구분    |       |       | 헛걸음(노쇼)   |            | 보상체계 인정 비율 |       |       | 대기시간 활동  |       |       |      |
|-------|-------|-------|-----------|------------|------------|-------|-------|----------|-------|-------|------|
| 고용 형태 | 공공 부조 | 이동 노동 | 헛걸음 경험 비율 | 월평균 헛걸음 횟수 | 대기 시간      | 이동 시간 | 근속 보상 | 다음 업무 준비 | 클대기   | 그냥 쉰다 | 기타   |
| 특고    | 민간    | 주업    | 90.4%     | 12.5회      | 2.5%       | 3.2%  | 22.2% | 48.0%    | 26.3% | 20.6% | 5.1% |
|       |       | 비주업   | 81.8%     | 4.8회       | 1.1%       | 2.2%  | 22.7% | 61.1%    | 7.8%  | 28.9% | 2.2%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21.8%     | 1.8회       | 1.6%       | 6.6%  | 1.8%  | 65.6%    | 1.6%  | 24.6% | 8.2% |
| 합계    |       |       | 77.6%     | 9.4회       | 3.0%       | 5.6%  | 25.1% | 54.9%    | 16.4% | 24.3% | 4.4% |

- 셋째, 이동노동자 다수가 특수고용 혹은 플랫폼노동자이거나 시간제노동자라서 기존 노동시장의 차별적 임금격차와 수준이 이동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투영되어 불평등한 노동시장 특성이 그대로 전이 되어 있음. 우선, 이동노동자 중 여성 다수 직종인 방과 후 강사, 재가요양사 등은 시급제 혹은 성과급제로 운영되고, 일부는 초단시간 형태로 운영됨. 이는 플랫폼기업들에서도 성별 임금공시제와 같은 정책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한편 일부 노사관계가 제도화되어 있거나 공공부문에서 이동노동자들간 일부 숙련과 경력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숙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실태조사 결과 기본업무 습득 기간은 7.8개월이었고, 숙달기간은 14.9개월이었음. 그러나 최소 2년이나 3년 이상의 이동노동자 다수는 임금·보수체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표5] 이동노동자 업무 숙련 기간(단위: 개월, 만원)

| 고용 형태     | 공공 민간 | 이동  | 노동시장 이력     |           | 업무 숙련 기간(개월) |       | 경력별 월평균 임금 |        |            |        |
|-----------|-------|-----|-------------|-----------|--------------|-------|------------|--------|------------|--------|
|           |       |     | 평균 경력기간 (년) | 15년 이상 비율 | 기본 업무 기간     | 숙달 기간 | 평균 숙달기간 미만 |        | 평균 숙달기간 이상 |        |
|           |       |     |             |           |              |       | 비율         | 월평균 임금 | 비율         | 월평균 임금 |
| 임금        | 민간    | 주업  | 10.9        | 29.4      | 10.4         | 20.7  | 4.7        | 378.0  | 95.3       | 318.2  |
|           |       | 비주업 | 17.1        | 73.3      | 7.5          | 18.6  | 0.0        | -      | 100.0      | 201.2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9.5         | 25.8      | 7.0          | 14.0  | 5.4        | 180.0  | 94.6       | 158.3  |
| 특고 플랫폼 노동 | 민간    | 주업  | 8.3         | 15.8      | 6.0          | 10.9  | 4.1        | 212.9  | 95.9       | 295.6  |
|           |       | 비주업 | 17.2        | 66.1      | 10.0         | 19.0  | 1.7        | 220.0  | 98.3       | 218.6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12.2        | 31.0      | 11.0         | 18.6  | 1.4        | 350.0  | 98.6       | 220.9  |
| 합계        |       |     | 10.3        | 27.2      | 7.8          | 14.9  | 3.9        | 258.6  | 96.1       | 268.9  |

## 2. 이동노동자 노동과정 인식

- 첫째, 서비스 이동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동노동자들은 ‘이동과정의 편리성’(100점 만점 기준 35.6점)에 대한 불편함 관련 의견이 많았고, 업무 특성상 ‘시간과 소득 연결’(81.5점)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실제로 ‘업무 수행에서 대기시간 필요성’(71.1점) 인식이 높았음.
- 서비스 노동자 노동과정 및 시간과 소득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주업’ 노동자들이 이동과정의 불편함(100점 기준 32.9점)을 나타내고 있었고, 시간과 소득 연결성 인식(83.3점)이나 업무 대기 필요성(75점)도 상대적으로 ‘부업’에 비해 높았음. 물론 업무 수행이 주된 일로 인식한 임금노동자에 비해 특수고용 형태 이동노동자들이 미세하지만 노동과정에서 시간 인식은 높았고, 대기시간 필요성이 낮았음.
- 둘째, 서비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과정 및 노동시간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부정적(34.2점)으로 나타났고, 남성(31.8점)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31.9점)가 임금노동자(37.7점)에 비해 더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주요 항목 5가지 중 가장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휴게시간(29.2점)과 대기시간(33점)이었음.
- 서비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과정 및 노동시간 적정성 관련 업무 이동이 주된 사람들의 응답 결과 임금노동자(34.6점)보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29.5점)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특히 주요 항목 5가지 중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대기시간(26.4점 ↔ 임금노동자 27.3점)과 휴게시간(27.2점 ↔ 27.3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대기시간’ 문제가 주요 핵심으로 확인됨.
- 셋째, 서비스 이동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업무상 이동이 주업인 노동자 중 <가치인정과 제도개선의 정책 지향>은 ‘가치인정 법제도화’(100점 만점 기준 94점)와 ‘노사정교섭 협의체 구성’(100점 만점 기준 90.4점)이었고, ‘이동노동자 보상체계’(88.1점), ‘숙련과 경력인정’(87.4점), ‘최소소득 보장제’(84.5점) 순이었음([별첨자료] 참조).
- 이동노동자 가치인정 관련한 제도적 과제에서 숙련과 경력인정 보상체계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3개)에 비해 성별 의견 격차(3점 ↔ 0.3점 격차), 주업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집단에서 숙련·경력 보상체계 관련 공공과 민간의 의견 격차(6.2점 ↔ 임금노동자 격차 3.5점)가 확인됨.

#### IV. 맺음말 - 제도와 정책 그리고 운동과제

- 국내에서도 이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대상 플랫폼경제에서의 노동법 회피 경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언급되면서 ‘최저보수 도입 방안’을 제시되고 있음(권오성:2023, 김중진:2023, 박은정:2024, 이정희:2024).<sup>9)</sup> 주된 문제의식은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작업에 대한 공정한 단가(fair rate)를 지급하는 모색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대표적으로 국내 도급제 보수의 공정성 문제와 철도역 구내매점 성과급 영업인 판례(대법원 2007.6.29. 선고 2004다48836판결)를 통해 플랫폼노동의 최저보수 도입 충족성을 언급(최저임금법 제5조 1항의 시간급 조항, 3항 및 시행령 4조)하고 있음.
- 또한 플랫폼노동과 가내 노동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가내노동법상 최저공임제도(업종)와 영국의 공정단가제(fair piece rate system ; 시간당 평균 작업 속도의 산출과 평균 비율 1.2로 나눈 단가) 사례도 언급하고 있음.<sup>10)</sup>
- **첫째**, 이동노동자 가치인정과 공정한 임금의 최저기준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특히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일감의 수요 파동성(fluctuation)을 지니기에, 이를 위해 임금소득 구조의 재분해 후 보상체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임.
- 이와 같은 방향은 기존의 최저임금법률 조항(제5조와 시행령 4조 삽입)을 통한 방식과 별도의 법률(표준 단가 설정) 등에서 검토할 수 있음. 혹은 개별 직종 관련 별도의 법령(각 별도법률)을 통해서 표준 단가를 마련하는 것임.<sup>11)</sup>
- 조금 더 지평을 넓히면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등에 보수산정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혹은 영국처럼 공공부문 임금정책위원회를 제안하고 가치인정 방식을 모색하는 것임.<sup>12)</sup>

9) 한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 기본법」 혹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과 같은 유사 법률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제 구성하여 제도화 논의를 진전시키고 여타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음.

10)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건당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는 제조업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상품의 양(Uph-Unit Per Hour)과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서비스업 UPH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노동자 가치인정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임.

11)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근 플랫폼노동자 법률(Digital Platform Workers' Rights Act, 2022)에서는 (최저임금minimum wage 지급)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소한 「2000년 근로기준법」 제23.1조의 최저임금(작성일 기준 시간당 캐나다\$15)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바 있음.

12) 서비스연맹의 2023년 정책연구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직무급과 사회적 임금 강화를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동노동자 영역에서 최소 단가 기준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임. 관련 보고서는 정승일·이문호·박명준·박선호·강은희(2023), 『서비스서비스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연구』, 서비스연맹, 110-117쪽.

[표6] 서비스 이동노동자 임금소득구조 가치인정 추정1

| 구분    |       |     | 월 평균 보상 가치 추정 4개 모델 |                |                |                | 월평균 추가 고려 3개 항목 |                  |              |
|-------|-------|-----|---------------------|----------------|----------------|----------------|-----------------|------------------|--------------|
| 고용 형태 | 공공 부조 | 이동  | 보상액 추정 1 (a+b+c)    | 보상액 추정 2 (a+b) | 보상액 추정 3 (b+c) | 보상액 추정 4 (a+c) | 노쇼 건수 환산액 (a)   | 이동거리 시간급 환산액 (b) | 대기시간 환산액 (c) |
| 임금    | 민간    | 주업  | 217.0               | 97.4           | 129.5          | 127.0          | 89.3            | 91.9             | 37.5         |
|       |       | 비주업 | 217.5               | 57.4           | 52.6           | 164.6          | 144.0           | 37.5             | 15.1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93.5                | 21.2           | 40.1           | 72.9           | 57.0            | 20.3             | 19.6         |
| 특고    | 민간    | 주업  | 214.4               | 107.6          | 136.8          | 119.5          | 80.8            | 99.5             | 38.2         |
|       |       | 비주업 | 107.6               | 26.7           | 36.1           | 99.0           | 84.4            | 22.4             | 13.9         |
|       | 공공    | 주업  | -                   | -              | -              | -              | -               | -                | -            |
|       |       | 비주업 | 176.9               | 84.4           | 50.3           | 94.4           | 63.9            | 33.8             | 15.9         |
| 합계    |       |     | 196.8               | 90.7           | 105.7          | 117.2          | 82.8            | 74.8             | 31.4         |

[표7] 서비스 이동노동자 임금소득구조 가치인정 추정2

|            | 월 평균 보상 가치 추정 4개 모델 |                |                |                | 월평균 추가 고려 3개 항목 |                  |              |
|------------|---------------------|----------------|----------------|----------------|-----------------|------------------|--------------|
|            | 보상액 추정 1 (a+b+c)    | 보상액 추정 2 (a+b) | 보상액 추정 3 (b+c) | 보상액 추정 4 (a+c) | 노쇼 건수 환산액 (a)   | 이동거리 시간급 환산액 (b) | 대기시간 환산액 (c) |
| 전체         | 196.8               | 90.5           | 105.6          | 117.2          | 82.8            | 74.6             | 31.4         |
| 배달라이더      | 264.4               | 166.2          | 223.6          | 99.4           | 28.7            | 153.1            | 70.5         |
| 대리운전기사     | 217.3               | 83.8           | 137.7          | 139.2          | 90.2            | 87.7             | 50.0         |
| 택배기사       | 290.1               | 168.5          | 174.5          | 150.1          | 111.3           | 143.0            | 34.5         |
| 우체국택배기사    | 172.4               | 131.3          | 152.2          | 49.9           | 24.3            | 126.9            | 22.8         |
| 마트배송기사     | 205.2               | 146.0          | 180.3          | 68.7           | 11.9            | 140.2            | 44.5         |
|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 234.2               | 101.3          | 137.1          | 139.4          | 98.2            | 94.3             | 42.6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155.7               | 50.4           | 62.6           | 116.4          | 92.6            | 39.5             | 23.2         |
| 학습지도사      | 120.1               | 29.8           | 38.4           | 106.4          | 90.4            | 24.3             | 14.0         |
| 예술강사       | 142.8               | 64.8           | 63.1           | 79.0           | 57.7            | 43.1             | 20.0         |
| 방과후강사      | 141.6               | 18.8           | 27.9           | 122.0          | 90.8            | 15.8             | 11.5         |
| 재가방문요양사    | 81.6                | 19.8           | 34.6           | 64.2           | 46.2            | 19.2             | 15.5         |
| 아이돌보미      | 72.1                | 19.5           | 46.4           | 53.7           | 44.3            | 20.1             | 26.3         |

참고: 월평균 노쇼 건수 환산액=월평균 노쇼 발생건수 × 건수당 평균 임금

월평균 이동거리 시간급=(하루 평균 이동거리 소요시간(분)/60) × 시간당 평균 임금

월평균 대기시간 시간급=(하루 평균 대기시간(분)/60) × 시간당 평균 임금

○ 둘째, 이동노동자 제도와 정책 과제 중 유관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현재 이동노동자의 단기적 과제(이동시간, 대기시간, 노쇼)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모든 포괄적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이동노동자의 노동과정과 ‘은폐된 시간’의 숨겨진 노동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sup>13)</sup>

13) 대기시간 논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고시원총무(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와 청원경찰(대법원 2023. 6. 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사례가 있음.

- 현재 노사관계가 설정된 업종 직업군에서부터 초기업별 교섭을 통해 정부 각 부처와 법령(생물법처럼)을 개정 혹은 지원(월평균 ‘노쇼’ 최소 지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임. 이는 기존 노사관계의 산업별 최저임금(금속, 보건, 금융 등)을 제시한 것과 유사한 방식임.
- 한편 현재 관련 정책(정책 과제 지원)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비임금성 지원(간접비)나 유급병가나 주 유급휴가, 사회보험료 등 임금노동자로서 적용받지 못하는 제반 지출 비용을 정부와 교섭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AB5 법률 논쟁 통해서 국내에 관련 내용이 소개될바 있음.<sup>14)</sup>

[표8] 서비스연맹 산하 주요 이동노동자 산업 및 노사관계 제도화 특징

| 직업업종         | 기업 사업장               | 노동시장 특징   |       | 제도적 기반 |         |                | 노사관계 규정             |                              |              |
|--------------|----------------------|-----------|-------|--------|---------|----------------|---------------------|------------------------------|--------------|
|              |                      | 고용형태      | 노동성격  | 공공, 민간 | 정부 부처   | 유관 법률          | 교섭방식, 대상            | 임금정책                         | 개정 규정        |
| 음식배달 기사      | 배민, 쿠팡, 요기요          | 특고/플랫폼    | 사물    | 민간     | 국토부     | 생활물류법          | 기업별 교섭              | 안전운임제                        | 안전교육 예산      |
| 대리운전 기사      | 카카오 대리               | 특고/플랫폼    | 대인    | 민간     | 국토부     |                | 개별교섭                |                              |              |
| 택배 기사        | CJ대한통운/한진/롯데/쿠팡 등    | 특고        | 사물    | 민간     | 국토부     | 생활물류법          |                     | 적정소득 보장                      |              |
| 마트배송 기사      |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 특고        | 사물    | 민간     | 산자부 동정위 |                | 운송사별 교섭/집단 교섭 추진 과정 | 적정수수료, 용차비 부담, 표준계약 등        |              |
|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 | 코웨이, SK매직서비스, 청호나이스  | 특고/정규직 혼재 | 사물/대인 | 민간     | 노동부     |                | 기업별교섭               | 인센티브 금지 체계                   |              |
| 대여제품 방문점검 기사 | 코웨이, SK매직서비스, LG 세라젬 | 특고/노동자    | 사물/대인 | 민간     | 노동부     |                | 기업별교섭               | 적정계정, 최저 기본급 보장              |              |
| 학습지도사        | 구몬, 대교, 재능교육 등       | 특고        | 대인    | 민간     | 노동부     |                | 기업별교섭               |                              |              |
| 예술강사         | 각 학교                 | 초단시간      |       | 공공     | 문체부 교육청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시간당 수업료, 거리 비례 교통비, 식대(8만 원) | 보조금 사업       |
| 방과후 강사       | 각 학교                 | 특고        |       | 공공     | 교육부 교육청 | 교육부 고시 2013-7호 | 교육청                 | 교육재정(시간당 수업료)                | 보조금 + 수익자 부담 |

14) 현행 캘리포니아주법은 「비즈니스와 전문직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이며, 이에 따르면, 개인 여객운송 중개업과 배달 중개업에 종사하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앱 기반 운전자”(app-based driver)는 “독립수급인”(independent contractor)이지 “근로자”(employee)가 아님. 따라서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즉 플랫폼 기업)는 자신과 계약한 앱 기반 운전자(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노동법전상 그 지급 또는 이행이 요구되는 연장근로수당, 유급병가,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대신 몇가지 의무를 부담함. 캘리포니아 주법([https://leginfo.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BPC&division=3.&title=&part=&chapter=10.5.&article=2](https://leginfo.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BPC&division=3.&title=&part=&chapter=10.5.&article=2))은 원문 참조

| 직업업종        | 기업<br>사업장 | 노동시장 특징     |      | 제도적 기반 |            |                   | 노사관계 규정             |                            |                     |
|-------------|-----------|-------------|------|--------|------------|-------------------|---------------------|----------------------------|---------------------|
|             |           | 고용형태        | 노동성격 | 공공, 민간 | 정부 부처      | 유관 법률             | 교섭방식,<br>대상         | 임금정책                       | 재정 규정               |
| 재가방문<br>요양사 | 개별 가구     | 기간제-시<br>간제 |      | 공공     | 복지부<br>지자체 | 노인장기<br>요양보험<br>법 | 기업별<br>교섭           | 법령<br>회계규칙<br>인건비<br>지출 비율 | 장기요양<br>보험료+보<br>조금 |
| 아이돌보<br>미   | 개별 가구     | 기간제-시<br>간제 |      | 공공     | 여가부<br>지자체 | 아이돌봄<br>지원법       | 지자체<br>운영기관<br>요구 중 | 시급 단가                      | 보조금                 |

- 셋째,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혹은 임금노동자와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으로 구분되는 이동노동자 영역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책과 교섭을 검토하는 것임. 무엇보다 공공부문은 다양한 기존 법령이나 정책(고시)을 통해 단가(시급)나 기준이 수립되기에 예술강사, 방과후 강사, 재가요양, 아이돌보미 등 포괄적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정 교섭(중앙 & 지방)을 검토하는 것임.
- 이미 학교비정규직처럼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통한 학습경험도 있고, 지자체 공공부문 생활임금(24년 2월 27일 기준 131곳)이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수당(광역 지자체 사례) 혹은 필수노동자 지원 수당(서울 성동구 사례)을 자치법규(조례)로 지원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더불어 기존의 성별임금 격차가 이동노동자들에게도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해소를 단계별로 여성 다수 직종의 노동자의 임금소득 격차 해소(초단시간 및 시급제)를 위해 최소노동시간보장제(울산동구 사례)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별첨자료] 서비스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현황 및 주요 조사 결과**

[부표1] 서비스 이동노동자 직업직종 유형별 현황

| 구분        | 내용           | 빈도 (명) | 비율(%)  | 분류 기준  |
|-----------|--------------|--------|--------|--|
| 성별        | 남성집중직업 응답자   | 796    | 65.7%  | 한 성별이 60% 이상 차지                                    |
|           | 여성집중직업 응답자   | 414    | 34.2%  |  |
|           | 소계           | 1,210  | 100.0% |  |
| 수입의 기준단가  | 개수(건수)       | 564    | 68.5%  | 1순위 응답 분석 처리                                       |
|           | 개수(건수)+거리    | 106    | 12.8%  |  |
|           | 개수(건수)+시간    | 153    | 18.5%  |  |
|           | 소계           | 823    | 100.0% |  |
| 노동이동 주된업무 | 이동이 주된 업무    | 752    | 66.9%  | '주된업무'라고 응답한 경우 60% 이상인 경우, 해당 직종을 이동이 주된 업무 판단    |
|           | 이동이 주된업무가 아님 | 372    | 33.1%  |  |
|           | 소계           | 1,124  | 100%   |  |
| 공공보조 여부   | 민간부문         | 942    | 77.8%  | (소속이나 재정) 공공 보조 받는 대상: 예술강사, 방과후강사, 재가방문요양사, 아이돌보미 |
|           | 공공부문         | 268    | 22.1%  |  |
|           | 소계           | 1,210  | 100.0% |  |
| 계약의 중복여부  | 중복 다수        | 160    | 13.2%  | 중복응답 비율 60%이상 직업                                   |
|           | 중복 소수        | 237    | 19.5%  | 중복응답 비율 30%이상~60%미만 직업                             |
|           | 중복 거의 없음     | 813    | 67.1%  | 중복응답 비율 30%미만 직업                                   |
|           | 소계           | 1,210  | 100.0% |  |

[부표2] 서비스 이동노동자 직업직종별 업무 특성 현황

|               | 성별       | 보수 단가 기준 설정 | 이동 주된 업무 특성 | 공공민간 성격 | 계약 중복성   |
|---------------|----------|-------------|-------------|---------|----------|
| 배달라이더         | 남성 집중 업무 | 개수+거리       | 이동노동 주된 업무  | 민간 부문   | 중복 소수    |
| 대리운전기사        |          |             |             |         | 중복 다수    |
| 택배기사          |          | 개수          |             |         | 중복 거의 없음 |
| 우체국택배기사       |          |             |             |         | 중복 소수    |
| 마트배송기사        |          |             |             |         | 중복 거의 없음 |
|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          |             |             |         | 중복 거의 없음 |
| 대여(가전)제품방문점검원 | 여성 집중 업무 | 개수+거리       | 이동노동 부수적 업무 | 공공 부문   | 중복 소수    |
| 학습지도교사        |          |             |             |         | 중복 거의 없음 |
| 예술강사          |          | 개수+시간       |             |         | 중복 다수    |
| 방과후강사         |          |             |             |         | 중복 소수    |
| 재가방문요양사       |          |             |             |         | 중복 거의 없음 |
| 아이돌보미         |          |             |             |         | 중복 거의 없음 |

[부표3] 서비스 이동노동자 노동과정 및 시간과 소득 인식- 고용&성별

| 고용구분         |    | 이동과정 편리성 | 시간과소득 연결성 | 업무 대기시간 필요성 |
|--------------|----|----------|-----------|-------------|
| 전체           | 여성 | 34.2     | 78.5      | 67.9        |
|              | 남성 | 36.8     | 84.0      | 73.8        |
|              | 계  | 35.6     | 81.5      | 71.1        |
| 임금 노동자       | 여성 | 35.7     | 74.2      | 61.2        |
|              | 남성 | 36.2     | 80.5      | 80.5        |
|              | 계  | 35.9     | 77.7      | 72.0        |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 여성 | 33.2     | 81.2      | 72.2        |
|              | 남성 | 37.3     | 86.5      | 69.1        |
|              | 계  | 35.4     | 84.0      | 70.6        |

\* 주 : 설문조사는 5점 척도 문항을 점수로 변환(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25점, 보통이다=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100점) 하여 처리한 것임. 각 항목 문항별 10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부표4] 서비스 이동노동자 노동과정 및 시간과 소득 인식- 고용&특성

| 구분                 |    | 이동과정<br>편리성 | 시간과소득<br>연결성 | 업무대기시간<br>필요성 |      |
|--------------------|----|-------------|--------------|---------------|------|
| 전체                 | 주업 | 민간부문        | 33.2         | 84.3          | 76.5 |
|                    |    | 공공부문        | 30.8         | 74.7          | 62.7 |
|                    |    | 계           | 32.9         | 83.3          | 75.0 |
|                    | 부업 | 민간부문        | 39.6         | 78.8          | 68.0 |
|                    |    | 공공부문        | 42.3         | 77.3          | 57.9 |
|                    |    | 계           | 40.7         | 78.2          | 64.0 |
|                    | 전체 | 민간부문        | 34.9         | 82.8          | 74.2 |
|                    |    | 공공부문        | 38.4         | 76.4          | 59.5 |
|                    |    | 계           | 35.6         | 81.5          | 71.2 |
| 임금<br>노동자          | 주업 | 민간부문        | 33.0         | 83.3          | 82.1 |
|                    |    | 공공부문        | 30.5         | 72.3          | 62.9 |
|                    |    | 계           | 32.3         | 80.3          | 76.9 |
|                    | 부업 | 민간부문        | 41.3         | 71.5          | 73.1 |
|                    |    | 공공부문        | 40.3         | 76.7          | 59.9 |
|                    |    | 계           | 40.8         | 74.4          | 65.6 |
|                    | 전체 | 민간부문        | 35.6         | 79.6          | 79.3 |
|                    |    | 공공부문        | 36.5         | 75.0          | 61.1 |
|                    |    | 계           | 36.0         | 77.8          | 72.0 |
| 특수고용<br>플랫폼<br>노동자 | 주업 | 민간부문        | 33.3         | 84.7          | 74.2 |
|                    |    | 공공부문        | 33.3         | 91.7          | 61.1 |
|                    |    | 계           | 33.3         | 84.9          | 74.0 |
|                    | 부업 | 민간부문        | 38.6         | 82.9          | 65.2 |
|                    |    | 공공부문        | 47.0         | 78.6          | 53.0 |
|                    |    | 계           | 40.5         | 81.9          | 62.4 |
|                    | 전체 | 민간부문        | 34.6         | 84.3          | 72.0 |
|                    |    | 공공부문        | 44.6         | 80.9          | 54.4 |
|                    |    | 계           | 35.4         | 84.0          | 70.6 |

[부표5] 이동노동자 노동과정 및 노동시간 적정성 인식 - 고용&성별

| 구분                 | 적정성<br>(a+b+c+d+e) | 작업시간<br>(a) | 이동시간<br>(b) | 대기시간<br>(c) | 휴게시간<br>(d) | 준비마감시간<br>(e) |      |
|--------------------|--------------------|-------------|-------------|-------------|-------------|---------------|------|
| 전체                 | 여성                 | 37.0        | 38.1        | 40.7        | 36.7        | 33.1          | 36.2 |
|                    | 남성                 | 31.8        | 36.3        | 34.2        | 30.0        | 26.0          | 32.8 |
|                    | 계                  | 34.2        | 37.1        | 37.1        | 33.0        | 29.2          | 34.3 |
| 임금<br>노동자          | 여성                 | 41.1        | 40.0        | 43.0        | 43.0        | 33.5          | 45.8 |
|                    | 남성                 | 35.5        | 42.0        | 37.2        | 34.4        | 28.7          | 35.2 |
|                    | 계                  | 37.7        | 41.2        | 39.5        | 37.8        | 30.6          | 39.5 |
| 특수고용<br>플랫폼<br>노동자 | 여성                 | 34.9        | 37.1        | 39.5        | 33.5        | 32.9          | 31.3 |
|                    | 남성                 | 29.2        | 32.2        | 32.1        | 26.8        | 24.1          | 31.0 |
|                    | 계                  | 31.9        | 34.5        | 35.6        | 30.0        | 28.3          | 31.2 |

[부표6] 이동노동자 노동과정 및 노동시간 적정성 인식 - 고용&특성

| 구분                 |    | 적정성<br>(a+b+c+d+e) | 작업시간<br>(a) | 이동시간<br>(b) | 대기시간<br>(c) | 휴게시간<br>(d) | 준비마감시간<br>(e) |      |
|--------------------|----|--------------------|-------------|-------------|-------------|-------------|---------------|------|
| 전체                 | 주업 | 민간부문               | 30.3        | 34.2        | 33.1        | 28.2        | 26.7          | 29.2 |
|                    |    | 공공부문               | 40.3        | 41.0        | 42.0        | 38.3        | 32.4          | 47.9 |
|                    |    | 계                  | 31.2        | 34.8        | 33.9        | 29.1        | 27.3          | 30.9 |
|                    | 부업 | 민간부문               | 36.3        | 39.0        | 42.0        | 36.0        | 28.5          | 36.0 |
|                    |    | 공공부문               | 47.0        | 46.5        | 47.0        | 49.7        | 40.8          | 51.1 |
|                    |    | 계                  | 40.3        | 41.8        | 43.9        | 41.1        | 33.0          | 41.6 |
|                    | 전체 | 민간부문               | 31.8        | 35.4        | 35.3        | 30.1        | 27.2          | 30.9 |
|                    |    | 공공부문               | 44.7        | 44.6        | 45.3        | 45.9        | 37.9          | 50.0 |
|                    |    | 계                  | 34.1        | 37.1        | 37.1        | 33.0        | 29.1          | 34.3 |
| 임금<br>노동자          | 주업 | 민간부문               | 32.9        | 39.9        | 34.9        | 32.9        | 25.7          | 31.1 |
|                    |    | 공공부문               | 40.5        | 40.4        | 42.3        | 39.7        | 32.7          | 47.4 |
|                    |    | 계                  | 34.6        | 40.0        | 36.6        | 34.4        | 27.3          | 34.7 |
|                    | 부업 | 민간부문               | 41.2        | 46.5        | 43.4        | 40.8        | 32.0          | 43.4 |
|                    |    | 공공부문               | 43.1        | 39.8        | 44.3        | 44.3        | 38.1          | 49.2 |
|                    |    | 계                  | 42.2        | 43.0        | 43.9        | 42.6        | 35.2          | 46.4 |
|                    | 전체 | 민간부문               | 35.4        | 41.8        | 37.4        | 35.2        | 27.6          | 34.7 |
|                    |    | 공공부문               | 42.1        | 40.0        | 43.5        | 42.5        | 36.0          | 48.5 |
|                    |    | 계                  | 37.7        | 41.2        | 39.5        | 37.7        | 30.5          | 39.4 |
| 특수고용<br>플랫폼<br>노동자 | 주업 | 민간부문               | 29.2        | 32.0        | 32.3        | 26.3        | 27.1          | 28.4 |
|                    |    | 공공부문               | 39.4        | 43.8        | 40.6        | 31.3        | 31.3          | 50.0 |
|                    |    | 계                  | 29.5        | 32.2        | 32.5        | 26.4        | 27.2          | 28.9 |
|                    | 부업 | 민간부문               | 33.5        | 34.8        | 41.3        | 33.3        | 26.5          | 31.8 |
|                    |    | 공공부문               | 54.7        | 59.7        | 52.4        | 60.5        | 46.0          | 54.8 |
|                    |    | 계                  | 38.5        | 40.6        | 43.9        | 39.7        | 31.1          | 37.2 |
|                    | 전체 | 민간부문               | 30.2        | 32.6        | 34.4        | 27.9        | 27.0          | 29.2 |
|                    |    | 공공부문               | 51.5        | 56.4        | 50.0        | 54.5        | 42.9          | 53.8 |
|                    |    | 계                  | 31.9        | 34.5        | 35.6        | 30.0        | 28.3          | 31.2 |

[부표7] 이동노동자 가치인정 제도와 정책 필요성 - 고용&성별(2024)

| 구분                 |    | 평균<br>(a+b+c+d+e) | 최소소득<br>보장제도<br>(a) | 이동시간<br>보상체계<br>(b) | 숙련경력<br>보상체계<br>(c) | 노사경교섭협의<br>체구성<br>(d) | 가치인정<br>법제도화<br>(e) |
|--------------------|----|-------------------|---------------------|---------------------|---------------------|-----------------------|---------------------|
| 전체                 | 여성 | 87.5              | 83.1                | 88.3                | 88.3                | 88.2                  | 89.4                |
|                    | 남성 | 86.7              | 82.9                | 85.9                | 85.3                | 89.4                  | 89.8                |
|                    | 계  | 87.0              | 83.0                | 87.0                | 86.6                | 88.9                  | 89.6                |
| 임금<br>노동자          | 여성 | 85.6              | 82.0                | 86.4                | 85.8                | 86.9                  | 86.9                |
|                    | 남성 | 86.2              | 80.5                | 85.1                | 86.1                | 90.2                  | 88.9                |
|                    | 계  | 85.9              | 81.1                | 85.6                | 86.0                | 88.9                  | 88.1                |
| 특수고용<br>플랫폼<br>노동자 | 여성 | 88.4              | 83.7                | 89.3                | 89.5                | 88.9                  | 90.7                |
|                    | 남성 | 87.0              | 84.6                | 86.5                | 84.8                | 88.9                  | 90.4                |
|                    | 계  | 87.7              | 84.2                | 87.8                | 87.1                | 88.9                  | 90.6                |

[부표8] 이동노동자 가치인정 제도와 정책 필요성 - 고용&특성(2024)

| 구분                 |    | 평균<br>(a+b+c+d+e) | 최소소득<br>보장제도<br>(a) | 이동시간<br>보상체계<br>(b) | 숙련경력<br>보상체계<br>(c) | 노사정교섭협의<br>체구성<br>(d) | 가치인정<br>법제도화<br>(e) |             |
|--------------------|----|-------------------|---------------------|---------------------|---------------------|-----------------------|---------------------|-------------|
| 전체                 | 주업 | 민간부문              | 88.4                | 84.5                | 88.3                | 87.6                  | 90.6                | 90.8        |
|                    |    | 공공부문              | 86.2                | 84.6                | 86.2                | 85.6                  | 87.8                | 86.7        |
|                    |    | 계                 | <b>88.2</b>         | <b>84.5</b>         | <b>88.1</b>         | <b>87.4</b>           | <b>90.4</b>         | <b>90.4</b> |
|                    | 부업 | 민간부문              | 84.2                | 79.6                | 84.4                | 84.4                  | 85.0                | 87.4        |
|                    |    | 공공부문              | 85.9                | 80.7                | 85.3                | 86.7                  | 87.5                | 89.4        |
|                    |    | 계                 | 84.8                | 80.0                | 84.7                | 85.2                  | 85.9                | 88.2        |
|                    | 전체 | 민간부문              | 87.3                | 83.3                | 87.4                | 86.8                  | 89.2                | 89.9        |
|                    |    | 공공부문              | 86.0                | 82.0                | 85.6                | 86.3                  | 87.6                | 88.5        |
|                    |    | 계                 | <b>87.1</b>         | <b>83.1</b>         | <b>87.0</b>         | <b>86.7</b>           | <b>88.9</b>         | <b>89.7</b> |
| 임금<br>노동자          | 주업 | 민간부문              | 87.7                | 82.0                | 86.8                | 87.5                  | 91.9                | 90.3        |
|                    |    | 공공부문              | 85.3                | 85.3                | 85.3                | 84.0                  | 86.5                | 85.3        |
|                    |    | 계                 | <b>87.1</b>         | <b>82.7</b>         | <b>86.4</b>         | <b>86.7</b>           | <b>90.7</b>         | <b>89.1</b> |
|                    | 부업 | 민간부문              | 80.2                | 76.8                | 80.3                | 79.4                  | 82.5                | 82.0        |
|                    |    | 공공부문              | 88.4                | 81.1                | 88.9                | 90.6                  | 90.2                | 91.4        |
|                    |    | 계                 | 84.4                | 79.0                | 84.7                | 85.2                  | 86.4                | 86.9        |
|                    | 전체 | 민간부문              | 85.5                | 80.4                | 84.8                | 85.1                  | 89.1                | 87.8        |
|                    |    | 공공부문              | 87.2                | 82.8                | 87.5                | 88.0                  | 88.8                | 89.0        |
|                    |    | 계                 | 86.1                | 81.2                | 85.8                | 86.1                  | 89.0                | 88.2        |
| 특수고용<br>플랫폼<br>노동자 | 주업 | 민간부문              | 88.6                | 85.5                | 89.0                | 87.6                  | 90.1                | 91.0        |
|                    |    | 공공부문              | 90.6                | 81.3                | 90.6                | 93.8                  | 93.8                | 93.8        |
|                    |    | 계                 | <b>88.7</b>         | <b>85.4</b>         | <b>89.0</b>         | <b>87.7</b>           | <b>90.2</b>         | <b>91.0</b> |
|                    | 부업 | 민간부문              | 86.5                | 81.3                | 86.8                | 87.3                  | 86.5                | 90.5        |
|                    |    | 공공부문              | 81.0                | 79.8                | 78.2                | 79.0                  | 82.3                | 85.5        |
|                    |    | 계                 | 85.2                | 80.9                | 84.7                | 85.3                  | 85.5                | 89.3        |
|                    | 전체 | 민간부문              | 88.1                | 84.5                | 88.5                | 87.5                  | 89.3                | 90.9        |
|                    |    | 공공부문              | 82.9                | 80.1                | 80.8                | 82.1                  | 84.6                | 87.2        |
|                    |    | 계                 | 87.7                | 84.2                | 87.8                | 87.1                  | 88.9                | 90.6        |